

의안번호	2211042
의 퇴 인	윤종균의원
회 답 일	2025.8.29.
추계번호	25B338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u>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u> 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실시하고 그</u>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1항) 1. 정기안전점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신설> 2. 정밀안전점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등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 및 지표투과레이더 등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지하의 공동 유무 등을 조사하는 안전점검<신설>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및 제거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제8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3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34조제1항) 개정안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는 현행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특히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의 공동(空洞)조사 외에 새로운 조사가 추가로 실시될 수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관리자인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¹⁾ 및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되고 있음

[표 1]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방법 및 주기

안전점검	세부내용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공동(空洞)조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 마다 1회 이상 실시

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 그런데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점검의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질 사항으로 현시점에 그 내용과 비용 수준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정밀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소요비용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안 제34조제8항 신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²⁾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및 제거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인 경우 안전조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서 규정한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등에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요건과 구체적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시설물 등의 규모, 보수·보강 및 제거가 필요한 범위 등을 현시점에 특정하기 곤란하여 예상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지반침하 발생현황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2)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102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지반침하 발생현황: 2018~2024년

(단위: 건)

시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서울특별시	17	13	15	11	20	22	17	115
부산광역시	30	15	29	17	8	16	19	134
대구광역시	5	3	2	1	2	4	3	20
인천광역시	10	8	20	2	1	2	3	46
광주광역시	28	20	55	13	6	28	6	156
대전광역시	4	20	20	8	9	9	4	74
울산광역시	6	1	2	5	3	0	0	17
세종특별자치시	3	1	2	0	1	0	3	10
경기도	79	53	47	35	36	26	28	304
강원도	41	5	30	5	10	18	2	111
충청북도	60	6	24	2	9	10	2	113
충청남도	3	1	5	5	4	0	2	20
전라북도	5	6	7	14	40	3	2	77
전라남도	11	5	7	7	5	4	4	43
경상북도	22	1	14	12	16	8	2	75
경상남도	10	32	5	5	4	9	3	68
제주특별자치도	4	2	0	0	3	3	1	13
합 계	338	193	284	142	177	162	101	1,397

자료: 지하안전정보시스템